

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 규정

제정 2024. 11. 1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 규정’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한축구협회(이하“협회”)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공인제도 운영)

- ① 협회는 국제축구연맹(FIFA)의 경기규칙에 따른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 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.
- ② 협회는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.
- ③ 협회는 대한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경기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규정 제정 및 개정)

- ① 협회는 대한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’에 따라 경기

시설·용품과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‘경기시설·용품 공인규정’(이하 “공인규정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의결을 거친 ‘공인규정’은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장 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)

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·용품 공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경기시설·용품 공인 및 검정
2. 경기시설·용품의 타당성 검토
3. 경기시설·용품의 안전성 검토
4. 경기시설·용품의 공인 운영 지침 및 품질기준의 제정 및 개정
5.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
6.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
7.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
8.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
9.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
10. 기타 경기시설·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

제5조(위원회 구성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1. 위원장 1명

2. 부위원장 1명

3. 위원 7명 내외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, 공학·생산 분야 전문가, 인증 전문가, 법률가, 용품 및 시설 전문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·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는 간사를 두어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도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

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9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협회의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제척 및 회피)

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인 심의

제11조(공인대상)

공인은 경기시설(부대시설 포함)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심의기준)

- ① 협회는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, 품질,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.
- ②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축구연맹(FIFA)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, 국제축구연맹(FIFA) 기준과 다른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각 공인 대상의 '품질기준'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- ③ 협회는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, 평가기준, 평가방법, 평가실비, 공인료 부과 기준 등 세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공인에 대한 제척)

협회의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협회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제14조(심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의를 위하여 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,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·용품 검사,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이어야 한다.

제15조(시설 공인)

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을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.

1.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
2.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
3.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
4.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

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경기시설의 설계단계 부터 본 협회 또는 시도축구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용품 공인)

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을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.

1. 경기용품의 국제축구연맹(FIFA) 기준 부합 여부
2.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사업자등록 유무, 자산 규모, 세금 납부실적,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, 사업 실적 등)

제17조(공인료)

① 협회는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는 별지 제1호서식 ‘공인료 기준

표'와 같다.

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인기간)

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각 용품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장 사후 관리

제19조(결과 공개)

협회는 공인의 결과를 이사회 및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하고,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1.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
2. 공인기간
3.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, 상호, 주사무소 주소
4. 공인료

제20조(시정요구)

- ① 협회는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·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거나 협회의 문제점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협회는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1조(규정의 해석)

- ① 대한체육회의 ‘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’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, 협회가 이 규정을 대한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’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- ②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추구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개선요구)

대한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협회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4. 11. 12.)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시설 및 품목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‘인조잔디 인증 품질절차서’는 폐기하고 본 규정으로 협회는 공인제도를 운영한다.
- ③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 인증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인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며,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

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각 인증 품목별 ‘품질기준’과 ‘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 운영 지침’을 따른다.

인조잔디 공인료 기준표

2024. 00. 00.

구 분	공인료 (VAT별도)	산출내역(비고)
가. 제품인증 (1등급~3등급 동일)	최초공인료 3,000만원/1년 (1개모델 기준) 갱신료 2,500만원/1년 (1개모델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 위원회 운영비 : 300만원 ○ 현장 실사 출장비 등 : 100만원 ○ 인증서 발급비용 및 사무 운영비 등 : 100만원 ○ 협회 앰블럼 상표권 사용료 : 2,500만원 ○ 공인료 및 갱신료는 제품(모델) 개별 기준이며 인증 유효기간도 개별 적용한다. 단, 한 인증신청자(1개 업체)가 여러 제품(모델)을 신청할 경우 추가제품의 공인료는 갱신료와 동일하게 부과한다 ○ 공인료 납부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시 300만원 납부 - 인증절차 완료 후, 잔액 납부 → 인증서 발급 - 부적합 결정시 추가 납부 금액 없음
나. 경기장인증 (1등급~3등급 동일)	최초공인료 500만원/2년 갱신료 300만원/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 위원회 운영비 : 300만원 ○ 현장 실사 출장비 등 : 100만원 ○ 인증서(현판) 발급비용 및 사무 운영비 등 : 100만원 ○ 2면 이상 경기장의 공인료 산출(갱신 포함) : 공인료 × 경기장 면수의 70% ○ 인조잔디 전면교체시 공인료는 갱신료로 부과한다 ○ 인증료 납부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시 선납비용 없으며, 절차 종료 후 일괄납부 → 인증서 발급 - 부적합 결정시 시험 비용외 추가 비용 없음
다. 시험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기관 위탁계약 금액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품인증 : 500만원 (VAT별도), 출장비 별도 2) 경기장인증 : 350만원 (VAT별도), 출장비 별도 	
라. 취소 /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신청 철회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: 신청료 100% 반환 - 심사 전 : 신청료 및 심사비 관련 전액 반환 - 심사 후 : 반환 없음 ○ 인증서 재발급 신청비 : 10만원 	

축구공 공인료 기준표

2024. 00. 00.

구 분	공인료 (VAT별도)	산출내역(비고)
가. KFA PRO	7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IFA 기준과 유사 금액 적용 ○ 인증 위원회 운영비 : 300만원 ○ 제품시험비용 : 50만원 / 1개 ○ 인증서 발급비용 및 사무 운영비 등 : 100만원 ○ 협회 엠블럼 상표권 사용료 ○ 제조사별 2개이상 검정시 공인료 : 개당 500만원 ○ 공인료는 제품(모델) 개별 기준이며 인증 유효기간도 개별 적용한다.
나. KFA BASIC	3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IFA 기준과 유사 금액 적용 ○ 인증 위원회 운영비 : 300만원 ○ 제품시험비용 : 50만원 / 1개 ○ 인증서 발급비용 및 사무 운영비 등 : 100만원 ○ 협회 엠블럼 상표권 사용료 ○ 공인료는 제품(모델) 개별 기준이며 인증 유효기간도 개별 적용한다.
다. 시험 수수료		○ 최초 시험비용은 협회에서 부담, 재시험시 제조사 부담(50만원 / 1개)
라. 취소 / 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신청 철회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: 신청료 100% 반환 - 심사 전 : 신청료 및 심사비 관련 전액 반환 - 심사 후 : 반환 없음 ○ 인증서 재발급 신청비 : 10만원

